올바른 보호구 착용

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감소 시키고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유해 ·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소극적 방어의 개념으로 보호구를 착용한다.

보호구는 재해방지를 위한 2차적인 수단으로써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호구의 미착용 또는 **보호구의 결함이 있을 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보호구 구비조건

보호구는 때에 따라서 생명의 보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통상적으로 작업현장의 환경조건이나 작업공정의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착용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움직이면서 작업하게 됨에 따라, 작업환경이 항상 일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호구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착용이 간편해야한다

보호구를 착용하고 벗을 때 수월해야 하고, 착용했을 때 속박감이 적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

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보호구를 착용했을 경우 활동이 자유로와야하며 이로 인해 생산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다. 유해 · 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해야 한다.

보호구란 그 해당 작업에서 예측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양호해야 한다

보호구는 신체에 착용해야 하므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염 등을 일으키면 안된다. 특히 금속재료는 내식성이 높고 녹을 방지하는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재료는 가볍고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해야 한다.

보호구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표면 등의 끝마무리가 잘되어서 이로 인한 상처 등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외양과 외관이 양호해야 한다.

우수한 성능을 갖춘 보호구라 할지라도 실제로 착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착용을 기피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착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외양과 외관이 우수해야 한다.

3. 안전인증(마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보호구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등을 심사하여 보호구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보호구의 선정, 구입, 사용시 안전인증 마크 부착 유무를 확인하여 적격품(인증 또는 신고제품)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시행)

4. 보호구 선택 및 관리시 주의사항

가. 보호구의 지급과 관리의 원칙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청결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적격품의 선정 및 개인전용 보호구의 지급

(2) 보호구의 취급, 착용, 보관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실시로 근로자 스스로 보호구의 필요성 인식
(3) 보호구 자급대장의 작성 및 근로자 서명

나. 보호구 선택

(1)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
(2) 품질이 우수한 인증품일 것
(3) 착용하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4)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다. 점검과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관리한다.

(1)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책임있는 감독자가 점검을 할 것
(2)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3)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화장품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것
(4)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5. 보호구 착용시 마음자세

(1)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해당 보호구를 착용한다.
(2) 보호구는 적격품을 구입하여 올바른 착용 방법을 준수 · 착용한다.
(3) **보호구 사용을 습관화해야 하며, 기능이 상실되거나 오염된 것은 교체 · 사용한다.**
(4)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며, 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유해 · 위험 작업별 적용 보호구〉

종 류		사용대상작업
안전모	낙하방지용 (A)	물체의 낙하와 비래의 위험작업
	낙하, 추락 방지용(AB)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추락의 위험작업
	낙하, 감전 방지용(AE)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감전의 위험작업
	다목적용 (ABE)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및 감전의 위험작업
보안경 보안면	차광보안경 일반보안경 차광보안면	용접 용단작업, 용광로 작업, 수은 등 살균작업, 레이저 취급 작업, 연마, 절삭, 분쇄, 화학약품 취급, 분진발생작업, 전기용접, 용단, 용광로 작업
방진, 방독, 송기마스크 및 공기호흡기		채광, 채석작업, 연삭작업, 연마작업, 방직작업, 용접작업 등 분진 또는 흄 발생작업, 유기용제 및 화학물질 취급 작업, 산소결핍 또는 질식위험 작업, 유독가스와 증기가 발생하는 작업
귀마개, 귀덮개		소음 발생 작업장
안전장갑, 내산장갑, 고무장갑		전기작업, 착암작업 및 진동 발생작업, 액체화학약품 취급 작업
방열복, 방열두건, 방열장갑, 신체보호의		용광로 용융작업 등 고열작업, 액체화학약품 취급 작업
안전화, 정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고무제 안전화		중량물 취급작업, 정전기 발생작업, 저압 또는 고압 전기 작업, 화학약품 취급 작업 등
벨트식 안전대 · 그네식 안전대		2m 이상의 고소작업 또는 선박주 외의 작업 등 추락 위험작업